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
------	----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 시 군의회의 의결이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수여대상자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군민증서의 문안 수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의회 폐회로 등으로 인해 의회 의결 불가능시 대체 근거 마련(제2조1항)
 -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1항에 단서조항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 협의 : 해당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마. 입법예고 : 2011.01.15 ~ 02.15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내에 소속되지 않는 내국인”을 “군내에 소속되지 않는 내국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